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

#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정관

---



##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정관

제정 2015. 08. 28.

일부개정 2017. 07. 26.

## 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완도군행복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17.07.26.>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만들기과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군 행복복지기금 조성 • 관리사업
2. 복지정책개발 조사 •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 교육 기부금(품) 운영관리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5. 복지시설의 수탁운영
6. 복지시설간 연계 •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7. 완도군수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8.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완도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법인의 설립·해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중요한 사항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③ 법인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 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특정한 사업목적에 지정하여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재산은 별도의 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이사장포함, 비상임) <개정 2017.07.26.>
2.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26.>

⑥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한다.

⑦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완도군 보건의료원장
2. 완도군 복지재단 업무소관 과장

⑧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⑨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⑩ 삭제 <개정 2017.07.26.>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완도군수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비상임 이사장,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년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07.26.>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6.>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07.26.>

## 제 5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7.07.26.>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완도군에 귀속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자문위원 등) ① 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7. 07. 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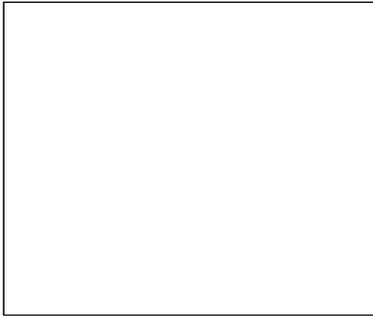
##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원)	출연자	비 고
설립 출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현 금 (예금)	5,000,000,000	완도군수	

【붙임】

##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